【 2 】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 2005. 09. 01
발 의 자 : 원대식 의원 외 2인

1. 제안이유

우리시의회 실정에 맞게 정례회를 탄력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골자

현재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되어있는 정례회의 회기 제한규정 삭제(안 제3조)

붙 임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중 "양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제3조로 한다.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제6조를 제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양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기) 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삭제
제4조(집회)(생 략)	제3조(집회)(현행과 같음)
제5조(심의)(생 략)	제4조(심의)(현행과 같음)
제6조(준용)(생 략)	제5조(준용)(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2005. 1. 27 개정 후)

第4節 召集과 會期

第41條 (開會·休會·閉會와 會議日數) ①地方議會의 開會·休會·閉會와 會期는 地方議會가 議決로 이를 정한다.

②삭제 <2005.1.27>

③年間 會議總日數는 定例會 및 臨時會를 合하여 市·道에 있어서는 120日,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80日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9.12.30, 1994.3.16, 1999.8.31>

지방자치법(2005. 1. 27 개정 전)

第4節 召集과 會期

第41條 (開會·休會·閉會와 會議日數) ①地方議會의 開會·休會·閉會와 會期는 地方議會가 議決로 이를 정한다.

②定例會의 會期는 年 2回를 合하여 市·道議會의 경우 40日 이내, **市·郡 및 自治區議會의 경우 35日 이내로 하고, 臨時會의 會期는 15日 이내로 한다. <改正 1991·12·31, 1994·3·16, 1999.8.31>**

③年間 會議總日數는 定例會 및 臨時會를 合하여 市·道에 있어서는 120日,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80日을 초과할 수 없다.
<改正 1989·12·30, 1994·3·16, 1999.8.31>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3. 10. 19 조례 제14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제3조(회기) 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집회)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10월에 집회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 집회한다.

제5조(심의)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